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보훈문화진흥법안 검 토 보 고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 윤한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165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정 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4
1. 입법 배경 및 필요성	4
2. 제정안의 구성체계	7
3. 주요 내용 검토	9
가. 총칙적 규정(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9
나. 보훈문화진흥 체계 수립 관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14
다. 보훈문화진흥에 관한 실태조사(안 제8조)	20
라. 보훈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9조)	23
마. 보훈문화 국제교류의 촉진 및 보훈문화진흥을 위한 민간 지원 (안 제11조 및 제12조)	25
바. 보훈문화진흥기관의 지정 및 취소(안 제13조 및 제14조)	28
※ 참고자료	34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윤한홍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5. 11. 12.
3. 회부일 : 2025. 11. 13.

II. 제안이유

현행 보훈 법령 체계는 국가가 필연적으로 주체가 되는 경제적 보상에 대해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보훈 문화 창달을 위한 선언적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보훈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이를 확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최근 국가유공자의 고령화 및 사망으로 인해 당사자의 생생한 증언을 통한 역사 계승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보훈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가 약화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관계기관 간 협업 유인이 부족하여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보훈문화 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존재해 보훈의 의미가 점차 희미해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동 법의 제정을 통해 보훈문화에 대한 정의와 기본원칙 등을

명확히 하고, 보훈문화진흥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보훈문화 교육,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 보훈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적 정책 기반을 제도화해 궁극적으로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사회를 위해 특별히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려 공동체 의식과 국가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보훈문화”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체감을 높이는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산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훈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는 독립·호국·민주의 균형과 조화, 정치적 중립성 보장, 일반 국민의 보훈문화 활동과 교육의 기회 확대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기본 원칙으로 함(안 제5조).

라. 국가보훈부장관은 5년마다 보훈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보훈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의식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 등의 기관을 보훈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 및 보훈문화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민간주도의 보훈문화 진흥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보훈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훈문화 진흥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보훈문화진흥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자.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에 관한 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5조).

IV. 검토의견

1. 입법 배경 및 필요성

□ 제정안은 ‘보훈문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보훈문화 교육 실시, 보훈 전반 국제교류 촉진, 민간 보훈문화 생태계조성, 전문기관 및 인력 역량 활용, 보훈문화 정보 포털 구축 등 보훈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국가보훈부는 현재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¹⁾ 「국가보훈 기본법」은 보훈의 여러 측면에 대하여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재량적인 선에 머무르고 있어 보훈문화의 진흥이 강화되어야 하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²⁾

- 현행 법령상 보훈문화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진흥하는 정책 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보훈은 국가 경쟁력 제고와 시민 삶의 질을 담보하는 가치임에도 우리 일상의 문화적 현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³⁾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양태건 등, 2018, “보훈문화 진흥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p.1, 한국법제연구원

3) 박경목, 2025, “문화로서의 보훈, 보훈문화 정착 방안 연구: 독립운동가 보훈을 중심으로”, p.67, 한국보훈논총 제24권제1호

- 또한 관계기관 간 협업 유인이 부족하여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보훈문화 정책 추진에도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함.
- 더불어 조국독립·호국안보·민주발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희생과 공헌을 아끼지 않았던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는 고령화로 인해 그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고,⁴⁾ 보훈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2030 세대에서 감소의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⁵⁾
- 보훈의 시초는 국가유공자의 희생 또는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 즉 ‘원호’였으나,
경제적 보상과 더불어, 그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문화가 자발적으로 조성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보훈’ 구현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 이러한 점에서 국가보훈의 역할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보상과 예우를 다하는 동시에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널리 확산시켜 사회적 가치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제정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윤곽을 정하고 있는 보훈

4)[참고자료 1]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감소 추이(p.34) 참조

5) 김대욱, 2024, “공중 관계성은 공중들의 공동체(사회) 참여를 증진하는가?”, p.37, 한국PR학회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훈문화 교육,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 보훈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적 정책 기반을 제도화해 궁극적으로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훈문화를 진흥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려는 제정안의 내용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보임.

- 제정안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보훈문화진흥법안」 제정을 통해 중장기 정책계획 수립 및 환류 체계를 마련하고 보훈문화 교육, 국제교류, 민간지원을 통한 보훈문화진흥 정책 실행 체계를 정립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제정안의 구성 체계

- 제정안은 장 구분 없이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5년 기본계획 및 1년 시행계획을 통해 중장기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환류 체계를 마련하며,
 보훈문화 교육, 국제교류, 민간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육성, 전문인력 양성, 정보 구축 등의 정책 실행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구성 체계>

구분	조문별 주요 내용
제1조	- 제정 목적 ※ 보훈문화진흥을 통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특별히 희생·공헌한 분들의 정신을 널리 알려 공동체의식 및 국가 자긍심 고취, 국민통합
제2조	보훈문화, 희생·공헌자, 보훈콘텐츠, 보훈교육 등 정책 용어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자체의 보훈문화진흥 시책 수립 의무 및 지원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일반법 지위 부여
제5조	독립·호국·민주의 역사적 균형 및 정치적 중립 등
제6조	5년단위 기본계획
제7조	1년 단위 시행계획 ※ 시행계획의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은 추진을 위한 협조
제8조	3년주기 실태조사의 수행, 공표
제9조	보훈문화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제10조	일반국민, 학교, 교원,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실시 의무 및 지원 근거

구분	조문별 주요 내용
제11조	보훈문화 국제교류의 촉진 의무 및 재외공간 협조 근거, 예산지원 근거
제12조	- 보훈문화진흥을 위해 민간 기관·단체 및 시설 지원 가능 - 조사·연구 및 학술 활동 - 교육·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보훈기념행사 및 캠페인 등 대국민 확산 활동 - 보훈문화콘텐츠 개발·보급·지원 활동
제13조	보훈문화진흥기관(청소년 시설, 평생교육기관, 그 밖의 기관) 지정
제14조	보훈문화진흥기관의 취소 및 재지정 제한
제15조	보훈문화종합포털 구축 및 운용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 근거
제16조	보훈문화진흥업무에 대한 지자체 및 진흥기관에 위임·위탁 근거

3. 주요 내용별 검토

가. 총칙적 규정(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제정안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문화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려 공동체 의식과 국가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훈문화”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체감을 높이는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2.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 등 공무수행 3. “보훈문화콘텐츠”란 보훈적 요소가 체화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 자료 또는 정보(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보훈기념행사”란 제2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관련된 특정 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행사로서, 그 정신을 기리는 활동을 말한다. 5. “보훈문화 교육”이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실과 그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념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국가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문화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훈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안 제1조는 제정안의 목적⁶⁾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려 공동체 의식과 국가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통합에 이바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입법목적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 법이 추구하는 궁극목적은 ‘공동체 의식과 국가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통합에 이바지함’이고, 이러한 목적은 「국가보훈기본법」 제2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안 제2조는 보훈문화, 희생·공헌자, 보훈문화콘텐츠, 보훈기념행사 및 보훈문화 교육 등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여 법해석을 명확히 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보임.

6) 목적규정은 법령의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 그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 따라서 목적규정은 그 법령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밝혀 그 법령의 각 조문을 해석하고 집행할 때 그 법령의 개별 조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적 해석의 기능을 하려는 것임.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17, p.47]

○ 제1호에서 “보훈문화”를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체감을 높이는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산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의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⁷⁾

- 「국가보훈 기본법」 제1조의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행위와 이에 속하는 제도, 규범, 관습, 절차, 행위 등 모든 문화적 산물을 ‘보훈의 문화’라고 할 수 있음.⁸⁾

○ 제2호 “희생·공헌자” 및 제3호 “보훈문화콘텐츠”는 각각 「국가보훈 기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정의와 유사한 것으로,⁹⁾

7)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8) 박경목. 전제서, p.68

「국가보훈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9)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 사항으로 보훈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이라 판단됨.

유사 입법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안 제4조는 제정안이 보훈문화진흥에 대해 일반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보훈문화진흥 중 특정 분야에 대한 개별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법률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통상적인 내용으로, 분야별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타 입법례들과 비교해볼 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유사 입법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보훈문화진흥 체계 수립 관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제정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훈문화진흥 정책 수립의 기본 원칙, 보훈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및 연도별 보훈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의 수립·시행을 규정함.

제 정 안
제5조(보훈문화진흥 정책 수립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문화진흥 정책을 수립·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역사가 균형있고 조화롭게 다뤄질 수 있도록 할 것 2.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할 것 3. 보훈문화 활동 참여와 보훈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것 4. 보훈문화의 국제 교류·협력을 증진할 것 제6조(보훈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5년마다 보훈문화진흥을 위하여 보훈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훈문화진흥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보훈문화진흥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보훈문화진흥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보훈문화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보훈문화 교육 기반 구성에 관한 사항 6. 보훈문화 관련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보훈문화진흥을 위한 민간 지원에 관한 사항 8. 보훈문화콘텐츠의 개발·보급·지원에 관한 사항 9. 보훈문화진흥정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10. 그 밖에 보훈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훈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보훈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사는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안 제5조는 독립·호국·민주의 균형과 조화, 정치적 중립성 보장, 국민의 보훈문화 활동과 교육 기회 확대,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을 보훈문화진흥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

「문화기본법」

제7조(문화정책 수립·시행상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2.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유사 입법례
3.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 4. 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문화의 국제 교류·협력을 증진할 것

- 안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한 것으로, 기본계획의 경우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또는 보고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¹⁰⁾
- 행정기관등의 국회보고 제도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입법·재정·국정통제 등 헌법상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감시의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¹¹⁾
- 참고로,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천계획의 조치 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8775호)이 계류 중이며,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 등의 국회 보고에 동의하는 입장임.

10) 참고자료 6 ‘중앙행정기관 법정관리 기본·실천계획 등에 관한 입법례’ 참조(p.43)

11) 국회 법제실, 2024, “법제기준과 실제”, P.720

- 한편, 동 조항의 체계·자구 수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안 제6조제1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하여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1항 후단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6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부재하므로, 「국가보훈 기본법」 제8조제5항과 같이 동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유사 입법례
「국가보훈 기본법」 제8조(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보훈발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가. 희생·공헌자의 공훈 및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보상(報償)에 관한 사항 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에 관한 사항 3. 국가보훈 관련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국가보훈 관련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보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유사 입법례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사업계획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7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체계·자구 수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안 제7조제1항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여금 “소관사항에 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계획 수립·시행 주체가 국가보훈부장관뿐임을 감안하면 “소관사항에 관하여”라는 문구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며,¹²⁾
- 안 제7조제4항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통보 관련 규정은 “제3항”이므로 문구 수정이 필요함.

유사 입법례
「국가보훈 기본법」 제9조(실천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보훈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소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실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2) 만약 「국가보훈 기본법」 제9조제1항과 같이 실천계획 수립·시행의 주체를 국가보훈부장관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연도별 소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입법례

실천계획을 변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실천계획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천계획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실천계획과 조치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보훈문화진흥에 관한 실태조사(안 제8조)

- 제정안 제8조는 보훈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보훈문화의식 및 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8조(보훈문화진흥에 관한 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보훈문화의식 및 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과 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재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¹³⁾ 동 조사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인식과 보훈정책의 효과성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훈문화진흥 전반에 대한 조사는 부재한 실정임. 이와 같이 보훈문화실태조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없어 전국민 대상의 유의미한 통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의 인식 실태를 바탕으로 한 보훈문화 정책 환류 및 장기적 비전

13) 「국가보훈 기본법」 제16조(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 실태, 국민의 보훈의식 등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설계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 이에 제정안과 같이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헌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답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보훈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일응 필요한 조치로 보임.

□ 다만, 이미 「국가보훈 기본법」 제16조에서 “국민의 보훈의식 등에 관한 조사”가 포함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의 ‘보훈문화진흥에 관한 실태조사’와 조사 대상·항목 등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바,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와 별도로 실시할 경우 차별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동 조항의 체계·자구 수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안 제8조제3항은 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에 통계 작성·관리에 관한 규정은 부재함.¹⁴⁾

따라서, 통계 작성·관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거나, 안 제8조제3항에서 통계 작성·관리 관련 문구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14) 「문화예술진흥법」의 경우, ‘통계 작성·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유사 입법례 참조).

유사 입법례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의2(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 설치·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보훈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9조)

- 제정안 제9조는 보훈문화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 대학 등의 기관을 보훈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자격 미달 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9조(보훈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보훈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지정사항을 다시 지정할 수 없다. ⑦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제6항에 따른 재지정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의 보훈문화 활동 체험과 학습을 지원하고, 보훈문화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안 제9조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조항의 체계·자구 수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안 제9조제4항은 양성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 실시에 관한 별도조항이 부재하기 때문에 타 입법례¹⁵⁾와 같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9조제6항은 “지정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지정사항을 다시 지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양성기관”을 지정취소하는 것인지 어떠한 사항을 지정취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타 입법례¹⁶⁾와 같이 “지정이 취소된 양성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15)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7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6)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전담기관 지정 등)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담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24. 2. 27.>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전문지원기관) ⑥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지원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24. 2. 27.>

마. 보훈문화 국제교류의 촉진 및 보훈문화진흥을 위한 민간 지원(안
제11조 및 제12조)

- 제정안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여금 보훈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를 촉진하고 보훈문화진흥을 위한 민간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1조(보훈문화 국제교류의 촉진)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진흥을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 행사 기획, 보훈문화콘텐츠 개발, 보훈문화 관련 국제행사의 참여 및 국내 유치 등 국제교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교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훈문화진흥을 위한 민간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진흥을 위한 민간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학술 활동 2. 보훈문화 교육 및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활동 3. 보훈문화 국제교류 촉진을 위한 활동 4. 보훈기념행사 또는 보훈문화 캠페인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문화 확산 활동 5. 보훈문화콘텐츠의 개발·보급·지원 활동

□ 안 제11조(보훈문화 국제교류의 촉진)는 독립운동 등 관련 사적지나 인물의 행적이 해외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보훈문화행사 등에서도 국제적 협력과 해외교류는 필요하다는 점에서 필요한 규정으로 보이며,

안 제12조(보훈문화진흥을 위한 민간 지원)는 보훈문화 진흥이라는 과제는 관련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내용을 확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됨.

□ 그러나, 안 제11조제3항은 국제교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안 제11조제3항은 제12조의 보훈문화 국제교류 촉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 기관·단체·시설 등에 국제교류 사업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국제교류 촉진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한 의도로 보이는바,

①안 제11조에 국제교류 사업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②위의 기관 또는 단체에 국제교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유사 입법례

「문학진흥법」

제11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 문학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
2.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조사·연구
3.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4.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바. 보훈문화진흥기관의 지정 및 취소(안 제13조 및 제14조)

- 제정안은 보훈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의 기관 또는 시설을 보훈문화진흥기관(이하 “진흥기관”이라 함)으로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3조(보훈문화진흥기관의 지정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 등을 보훈문화진흥기관(이하 “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그 밖에 보훈문화를 진흥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등 ② 진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보훈문화 교육 및 그에 대한 지원 2. 보훈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3. 보훈문화진흥을 위한 전시·행사 등 문화사업 및 그에 대한 지원 4. 보훈문화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촉진 사업 및 그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진흥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진흥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승낙이 있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④ 진흥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진흥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진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진흥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진흥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지정사항을 다시 지정할 수 없다.

④ 진흥기관의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의 진흥기관은 보훈문화 교육, 보훈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보훈문화진흥을 위한 전시·행사 등 문화사업 및 보훈문화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촉진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및 그 밖에 보훈문화를 진흥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등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유사 입법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유사 입법례

1.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전시·홍보 및 그에 대한 지원
 3. 전통문화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예술진흥법」

-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유사 입법례

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시·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나, 「문화예술진흥법」의 전문예술법인·단체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를 지정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제정안은 보훈문화 진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청소년활동시설과 평생교육기관을 지정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청소년활동시설과 평생교육기관이 보훈문화 교육과 보훈문화진흥을 위한 전시·행사 등 문화사업은 일정 부분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보훈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및 보훈문화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촉진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이를 감안하면, 보훈문화 교육, 보훈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보훈문화진흥을 위한 전시·행사 등 문화사업 및 국제교류 촉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서는 국가보훈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좌우됨 없이 전문성을 갖추고 보훈문화 확산을 전담하는 기관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우리위원회에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사, 정책연구·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는바,¹⁷⁾ 제정안은 동 개정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동 조항의 체계·자구 수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안 제14조제2항은 진흥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 실시에 관한 별도조항이 부재하기 때문에 타 입법례¹⁸⁾와 같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으로 명확

17)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29, 221007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88)

18)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7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14조제3항은 “지정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지정사항을 다시 지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진흥기관”을 지정취소하는 것이지 어떠한 사항을 지정취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타 입법례¹⁹⁾와 같이 “지정이 취소된 진흥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10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9)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전담기관 지정 등)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담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24. 2. 27.>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전문지원기관) ⑥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지원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24. 2. 27.>

참고 1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감소 추이

(단위: 명)

구 분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독립유공자	7,838	7,518	6,921	6,116	5,072	3,760
- 본인	7	2	2	0	0	0
- 유족	7,831	7,516	6,919	6,116	5,072	3,760
참전유공자	203,745	135,435	73,199	32,102	11,652	3,875
- 본인	203,745	135,435	73,199	32,102	11,652	3,875
- 유족	0	0	0	0	0	0
고엽제 등 환자	51,542	42,799	31,479	20,166	3,986	379
- 본인	51,542	42,799	31,479	20,166	3,986	379
- 유족	0	0	0	0	0	0
5·18민주유공자	4,517	4,537	4,472	4,248	3,802	3,257
- 본인	3,771	3,847	3,824	3,650	3,265	2,789
- 유족	746	690	648	598	537	468
특수임무유공자	3,683	3,622	3,522	3,381	3,163	2,907
- 본인	2,869	2,784	2,661	2,491	2,278	2,035
- 유족	814	838	861	890	885	872
제대군인	112,215	118,681	122,725	124,918	124,538	122,049
- 본인	112,215	118,681	122,725	124,918	124,538	122,049
- 유족	0	0	0	0	0	0
국가유공자	415,285	428,643	433,571	422,969	397,667	363,191
- 본인	164,341	167,249	171,486	174,360	178,142	180,824
- 유족	250,944	261,394	262,085	248,609	219,525	182,367
보훈보상대상자	8,963	11,881	14,593	17,049	19,029	20,500
- 본인	6,871	9,069	11,102	12,917	14,365	15,459
- 유족	2,092	2,812	3,491	4,132	4,664	5,041
6·18자유상이자	266	197	160	138	119	92
- 본인	25	9	3	1	1	1
- 유족	241	188	157	137	118	91
지원대상자	2,853	2,817	2,716	2,590	2,415	2,181
- 본인	2,327	2,291	2,205	2,102	1,987	1,829
- 유족	526	526	511	488	428	352

자료: 보훈교육연구원

□ 국가보훈기본법

제 4장 보훈문화의 창달

◇ 제22조(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참고 3

국가보훈기본법 규정사항에 대한 개별법을 제정 현황

국가보훈기본법	개별 법률
제22조(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기념일·추모일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와 관련된 특정 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하여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고 희생·공헌자를 기리는 각종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지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항·항만·도로·거리·광장·공원·철도역 및 지하철역 등에 대하여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행안부)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조형물·사	보훈기념시설법 (25.8월 정부 발의, 정무위 계류중)

국가보훈기본법	개별 법률
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민간단체 등이 제2항에 따른 기념관·전시관·조형물 또는 상징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립이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제27조(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 등에 안장하거나 안치할 수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문화기본법(문화체육관광부)

◇ 제정이유

현행 문화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률은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주로 문화예술 창작자나 사업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 교육 및 관련 산업 진흥에 치우쳐 있어,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는바,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문화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의 책무 등을 명시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역으로서의 문화, 문화 가치의 사회 영역 전반에의 확산, 문화 표현과 활동의 자유권과 평등권 등을 명시함(제2조).
- 나. 문화 개념을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폭넓게 규정함(제3조).
- 다.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인 ‘문화권’에 대한 근거 마련함(제4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진흥정책 시행, 지역 간 문화격차의 해소,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 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제5조).
- 마. 문화정책의 일관성과 가치판단 준거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의 다양성·자율성·창조성의 확산 등 문화정책의 기본원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제7조).
- 바. 문화진흥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제8조).
- 사. 문화유산, 국어,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복지, 여가문화 등에 관한 문화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제9조).
- 아. 문화 인력 양성,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개발, 문화의 달, 재정 지원 등 문화 진흥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독서문화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관광부장관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독서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도록 하며, 그 밖에 지역·학교 및 직장에서의 독서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인문학 및 인문정신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 제정이유

과학기술분야는 다양한 법적 기반 하에 중장기 목표와 계획에 의한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인문학 진흥정책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하고 시민사회에서 급증하는 인문활동에 대응하여 시민 주도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체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기초학문으로서의 인문학 진흥 및 국가 인문역량 확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인문학 생태계 구축 및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국민 행복도 저하, 사회문화적 병리현상에 대응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간중심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지역문화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 제정이유

현행법 체계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법률에 지역문화에 관한 사항이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문화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 제정이유

선진해양강국은 일찍이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가 차원의 해양교육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교육과 관련하여 법적 기반과 제도가 미흡하여 해양교육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해양문화를 산업화에 활용하기 위한 해양

문화 자료의 조사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미국) ICR, Patriotism Survey

- 본인의 애국심 수준, 지난 5년 간 애국심 변화, 맹세·국기게양·국가제창 등의 이행유무, 참정권 행사 여부 등을 조사
- 독립기념일 활동 계획 및 행사 규모 변경 필요 여부를 물어, 보훈기념일의 의미와 취지가 퇴색되지 않았는지 점검

□ (미국) 시카고대학 전국여론조사센터, General Social Survey

-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월성 및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에 대해 질문, 추가로 국가 정체성에 대한 필요성과 맹목적 애국심 질문 포함
 - * "사람들은 국가가 잘못하더라도 그들의 국가를 지지해야 한다."라는 문항을 통해 맹목적 차원의 애국심 수준을 추가적으로 조사
- 영역별 자긍심은 국가 자긍심의 원천을 파악하기 위해 항목별로 수준 조사

□ (영국) British Social Attitude Survey

- '83년부터 매년 실시('88년, '92년 제외)되며, 반복되는 핵심 질문과 사회·경제·정치·도덕적 이슈에 따라 포함되는 비정기적 질문으로 구성
- 애국심 수준, 국가 자긍심의 인식 수준 및 원천, 맹목적(강한) 애국심 평가에 관한 질문

□ (일본) 사회의식에 관한 여론조사

- 애국심 수준과 애국심 향상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질문
-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국민의 이념적 지향성 조사, 사회 공헌 의식과 구체적 공헌내용 파악

□ (이스라엘) IDB Survey on Patriotism in Israel's 60th Year

- 사회적 이슈와 연계해 포괄적인 조사, 애국심의 중요 구성 요소·전쟁 발발 시 국가를 위한 전투 참여·타국 이주 가능성·애국심 수준 변화 질문
 - * 성인남녀 4,802명 대상으로 이민 관련 설문조사 결과 70.8%가 '기회가 된다면 외국으로 이민 갈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취업정보 포털 잡코리아, '17년)

참고6

중앙행정기관 법정관리 기본·실천계획 등에 관한 입법례

법령명	소관부처	기본계획			실천(시행)계획			비고
		수립	심의	국회 제출	수립	심의	국회 제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토교통부	5년 주기	국가공간 정보 위원회	○	매년	○	○	국가공간정보 정책 기본·실시계획
문화기본법	문화체육 관광부	5년 주기	X	○	매년	X	○	문화진흥 기본·실시계획
양성평등기본법	여성가족부	5년 주기	양성평등 위원회	○	매년	○	○	양성평등정책 기본·실시계획
청년기본법	국무조정실	5년 주기	청년 정책조정 위원회	○	매년	○	○	청년정책 기본·실시계획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청	5년 주기	재외동포 정책 위원회	○	매년	○	X	기본·시행계획 추진상황 등 보고서 국회 제출
지식재산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5년 주기	국가지식 재산 위원회	X	매년	○	X	시행계획 추진실적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통상 자원부	5년 주기	국가표준 심의회	X	매년	○	X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5년 주기	국가물류 정책 위원회	X	매년	물류정 책분과 위원회	X	
소방기본법	소방청	5년 주기	X	X	매년	X	X	
스포츠기본법	문화체육 관광부	5년 주기	국가 스포츠정 책 위원회	X	매년	X	X	
자격기본법	교육부	5년 주기	자격정책 심의회	X	매년	X	X	